

가스 안전



가스 안전

학습목표



“가스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이해한다.”

“가스 사고의 원인 및 대응방법을 이해한다.”

CONTENTS

1. 가스안전 개요

-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2 고압가스 개요
- 1.3 가스의 분류
- 1.4 사용신고

2. 종류별 가스 안전관리

- 2.1.1 고압가스 사용시설 구성도
- 2.1.2 가스용기의 구분
- 2.2.1 불연성가스
- 2.2.2 가연성가스
- 2.2.3 산화성가스
- 2.2.4 독성가스
- 2.3.1 고압가스 표지

3. 가스 설비 및 운영 기준

- 3.1 용기보관소
- 3.2 환기/비상전력설비
- 3.3 가스안전설비

4. 사고 사례 및 대처요령

5. 가스 사고 예방 및 대책

- 5.1 개인보호구
- 5.2 가스누출 시 조치요령



1. 가스안전 개요







목적

-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 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법령 및 하위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6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6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



법률 제개정 추진경과

- 1983. 12. 31 제정(법률 제3703호)
- 1984. 07. 01 시행
- 2016. 12. 02 개정(법률 제14308호)



법률 주요 조항

-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20조(사용신고 등)

압축가스

- 상용의 온도 또는 35°C에서 압력 1.0MPa 이상인 기체

액화가스

- 상용 온도 또는 35°C에서 압력 0.2MPa 이상인 액화가스
- 35°C에서 0MPa를 초과하는 액화시안화수소(HCN), 액화산화에틸렌(C_2H_4O), 액화브롬화메탄(CH_3Br)

용해가스

- 15°C에서 0MPa 이상인 아세틸렌 가스

가연성가스

- 공기 중 연소하는 가스로서 공기 중 폭발한계* 하한이 10%이하,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 폭발한계란 공기와 가스가 혼합된 경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농도의 한계

독성가스

-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 가 5000ppm이하인 가스

* 허용농도(LC50, 반수치사농도) : 가스를 성숙한 흰쥐의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이상 존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농도

주요 독성가스 정보

| 순 번 | 가스명 | CAS No. | 분자식 | 폭발범위 | LC50 (ppm) | TLV-TWA (ppm) |
|-----|---------|------------|--------|----------|------------|---------------|
| 1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C3H3N | 3~17 | 666 | 2 |
| 2 | 아크릴알데히드 | 107-02-8 | C3H4O | 2.8~31 | 65 | 0.1 |
| 3 | 아황산가스 | 7446-09-5 | SO2 | - | 2520 | 2 |
| 4 | 암모니아 | 7664-41-7 | NH3 | 15~28 | 7338 | 25 |
| 5 | 일산화탄소 | 630-08-0 | CO | 12.5~74 | 3760 | 25 |
| 6 | 이황화탄소 | 75-15-0 | CS2 | 1.3~50 | - | 10 |
| 7 | 불소 | 7782-41-4 | F2 | - | 185 | 1 |
| 8 | 염소 | 7782-50-5 | Cl2 | - | 293 | 0.5 |
| 9 | 브롬화메탄 | 74-83-9 | CH3Br | 10~16 | 850 | 5 |
| 10 | 염화메탄 | 74-87-3 | CH3Cl | 8.1~17.4 | 5133 | 50 |
| 11 | 염화프렌 | 126-99-8 | C4H5Cl | 4~20 | - | 10 |
| 12 | 산화에틸렌 | 75-21-8 | C2H4O | 3~100 | 2900 | 1 |
| 13 | 시안화수소 | 74-90-8 | HCN | 5.6~40 | 144 | 10 |
| 14 | 황화수소 | 231-977-3 | H2S | 4~44 | 712 | 10 |
| 15 | 모노메틸아민 | 74-89-5 | CH5N | 4.9~20.7 | 7110 | 5 |
| 16 | 디메틸아민 | 124-40-3 | C2H7N | 2.8~14.4 | 5290 | 5 |
| 17 | 트리메틸아민 | 75-50-3 | C3H9N | 2.0~11.6 | 7000 | 5 |
| 18 | 벤젠 | 71-43-2 | C6H6 | 1.4~7.5 | 13800 | 1 |
| 19 | 포스겐 | 75-44-5 | COCl2 | - | 5 | 0.1 |
| 20 | 요오드화수소 | 10034-85-2 | HI | - | 2860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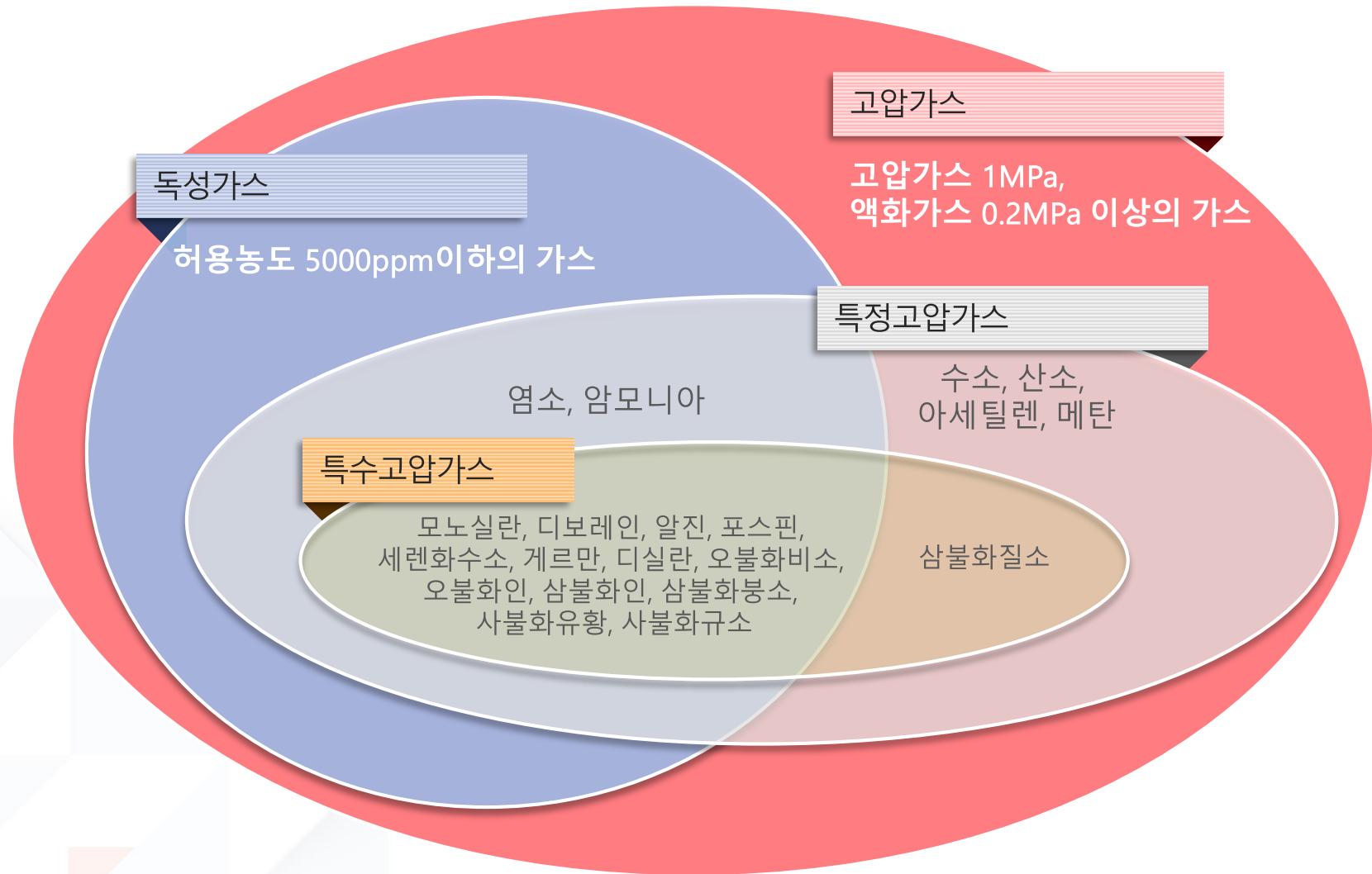
주요 독성가스 정보

| 순 번 | 가스명 | CAS No. | 분자식 | 폭발범위 | LC50 (ppm) | TLV-TWA (ppm) |
|-----|--------|------------|----------|----------|------------|---------------|
| 21 | 브롬화수소 | 10035-10-6 | HBr | - | 2860 | 3 |
| 22 | 염화수소 | 7647-01-0 | HCl | - | 2810 | 2 |
| 23 | 불화수소 | 7664-39-3 | HF | - | 1307 | 3 |
| 24 | 겨자가스 | 505-60-2 | C4H8Cl2S | - | 4 | - |
| 25 | 알진 | 7784-42-1 | AsH3 | 5.1~100 | 178 | 0.05 |
| 26 | 모노실란 | 7803-62-5 | SiH4 | 1.37~100 | 19000 | 5 |
| 27 | 디실란 | 1590-87-0 | Si2H6 | - | - | - |
| 28 | 디보레인 | 19287-45-7 | B2H6 | 0.5~88.0 | 80 | 0.1 |
| 29 | 세렌화수소 | 7783-07-5 | SeH2 | - | 51 | 0.05 |
| 30 | 포스핀 | 7803-51-2 | PH3 | 1.8~100 | 20 | 0.3 |
| 31 | 모노게르만 | 7782-65-2 | GeH4 | - | 620 | 0.2 |
| 32 | 일산화질소 | 10102-43-9 | NO | - | 115 | 25 |
| 33 | 육불화텅스텐 | 7783-82-6 | WF6 | - | 218 | 3 |
| 34 | 삼염화붕소 | 10294-94-5 | BCl3 | - | 2541 | 5 |
| 35 | 오불화비소 | 7784-36-3 | AsF5 | - | 178 | 0.01 |
| 36 | 오불화인 | 7647-19-0 | PF5 | - | 261 | 2.5 |
| 37 | 삼불화인 | 7783-55-3 | PF3 | - | 436 | 3 |
| 38 | 사불화붕소 | 7637-07-02 | BF3 | - | 864 | 1 |
| 39 | 사불화유황 | 7783-60-0 | SF4 | - | 40 | 0.1 |
| 40 | 사불화규소 | 7783-61-1 | SiF4 | - | 922 | 2.5 |

유해성에 따른 가스의 분류



특정 고압가스의 종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용신고



연구실에서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전 사용 신고 필요

신고대상



- 액화가스 저장능력 250kg 이상
- 압축가스 저장능력 50m³이상
- 특정고압가스 중 독성가스 (단, 저장 능력에 상관 없음)
- 배관으로 공급받는 경우
-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고압가스



수소, 산소, 메탄,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등 20종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절차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고압가스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2.25>
인터넷(www.mien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미량설비 이외로 난문 천고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종식

| | | |
|---|---|-----------|
| 신고인 | 상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 |
| | 대표자 성명: 총장 생년월일: 11- | |
| 세부내용 | 사용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계공학과 신에너지반응시스템연구실 / 전화번호: 042-XXXX-XXXX) 가스의 종류: NH ₃ (암모니아) 저항능력: 25.27kg 사용 목적·방법: 암모니아 직접 주입식 연료전지에 관한 연구 월간 사용량: 0.01kg/월 수율 장점: 6% | |
|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 성명: 지도교수 직위: 지도교수 자격증번호: - 선임 연월일: - 취업 동의: - 성명: 연구실안전업무담당 직위: 연구실안전업무담당 자격증번호: - 선임 연월일: - 취업 동의: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2017년 12월 신고인 한국과학기술원 | |
| 접수부서명 | 접수일자 | 수수료 입금 |
| 210mm x 297mm (백지자 80g/m ²) | | |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증명서

제 2015-3670106-12-2-00009 호

| | |
|-------|--------|
| 첨부부서명 | 자료 경제과 |
| 담당자명 | 성관희 |
| 접수번호 | 2325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 | | | |
|-----------|-----------------|--------|------------|
| ① 상호 | 대한광역시 유성구 | | |
| ② 성명(대표자) | ○○○ | ③ 생년월일 | ○○○○-○○-○○ |
| ④ 주소 | 대한광역시 유성구 ○○○○○ | | |
| ⑤ 사용처 | 대한광역시 유성구 ○○○○○ | | |
| ⑥ 사용 목적 | ○○○○○ | | |
| ⑦ 가스명 | 액체 질소 | ⑧ 자장량 | 25.27k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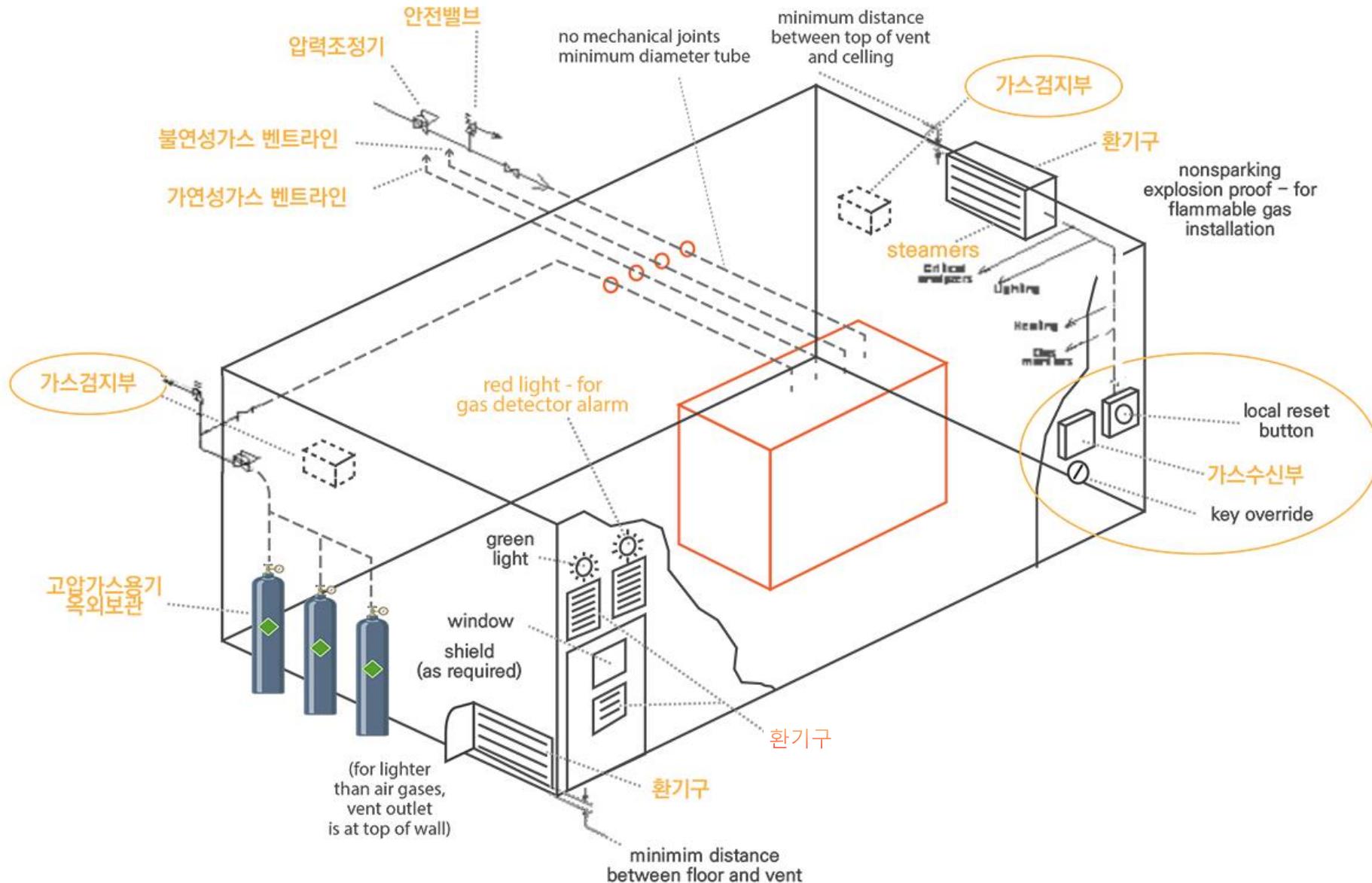
관련 116호 (2015.12.15) 유통공학동 2410호

완성/정기검사 증명서



2. 가스 종류별 안전 관리





고압가스 용기의 색상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염소
LPG
기타

가연성 가스 용기는 “연”,
독성 가스는 “독” 표시

산소
수소
아세틸렌
염소
암모니아

불연성가스 종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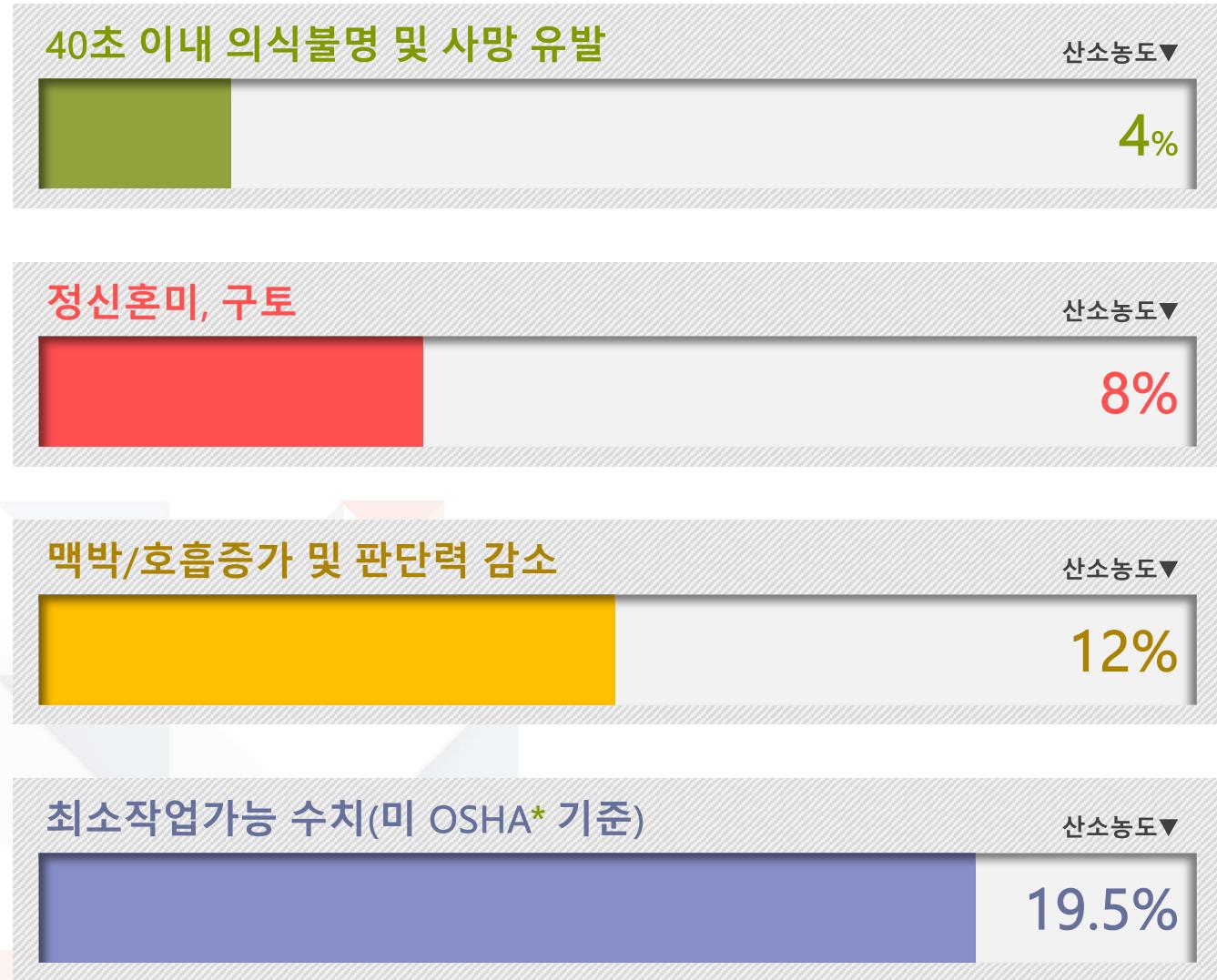
종 류

- 산업용 가스 : 질소, 헬륨, 알곤 등
- 특수ガ스 : 크세논, 크립톤, 육불화황 등

특 징

- “Lowest Hazard but Highest Risk”
- 무색, 무취, 비자극성 / 실내 누출 시 적절한 환기 및 산소 농도 감시 요망
- 산소 결핍에 의한 치명적인 결과 초래 가능
- 용기 전도에 의한 밸브 파손 : 위험 상황 초래
 - 사용 중 : 전도방지 조치
 - 미 사용 : 밸브캡 설치

산소농도에 따른 신체증상



가스 실린더 고정

- 고압가스 용기는 체인이나 브라켓 등을 이용하여 실린더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전도방지 조치는 실린더 바닥으로부터 1/3, 2/3지점 2개소에 설치
-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는 5m 거리를 두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8m 안전거리 확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의 위험성

Don't turn a cylinder into a rocket!



Secure and cap cylinders when not in use.

가연성가스 종류 및 특징

종 류

- 지정가스 :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산화에틸렌, 벤젠 등 32종
- 그 밖의 가스 : 폭발한계 하한이 10%이하,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

특 징

- Flammable range in air(연소범위 또는 폭발범위, 폭발한계)
- 대기 중 공기와 가스 혼합 시 폭발이 가능한 범위
- LFL* /UFL*(LEL 10%이하, UFL-LFL=20% 이상 : 가연성)
*LFL : 폭발 하한계, *UFL : 폭발 상한계
- Auto Ignition Temperature(자동발화온도, AIT)
- 점화원 없이 외기의 온도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만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온도
- 자기발화가스(Pyrophoric Gas) : AIT < 상온

가연성가스의 안전설비

가스누출경보장치

가스저장 및 사용 장소의 가스누출 검지기 설치 위치 고려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천정에서 30cm이내 설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가연성가스의 위험 제어 방

법

가연성가스 사용 및 보관지역은 적절한 방폭설비 설치

가스누출경보장치와 연동된 자동차단밸브 설치

방염복, 가죽장갑, 보안경, 안면 보호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산화성가스 종류 및 특징

종 류

- 산소, 삼불화질소, 아산화질소, 불소

특 징

- 주변 물질의 연소 및 반응을 촉진
 - 농도가 높아지면 급격하게 연소성과 반응성 증가
 - 산소 농도 과잉환경 > 23.5%
-
- 점화원 관리 필수
 - 유체와 배관 내부의 마찰 : 적절한 배관 재질 선정 및 유속제어
 - 오염물질(오일 등) 접촉 : 오일 및 불순물 제거

독성가스 종류 및 특징

종 류

- 지정가스 : 암모니아, 염소, 모노실란 등 31종
- 그 밖의 가스 : 공기중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허용농도 5000ppm 이하

특 징

- 작업자 신체 & 장비 부식
- 용기 내 가스 비부식성(무수) : 대기 중 수분과 결합 부식성
 - 사용 전 수분 제거, 통제
- 산성가스 : 산성 물질(수분 반응)
- 염기성가스 : 염기성 물질(수분 반응)
 - 약산성 또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제독

독성가스 중화제독장치

- 독성가스는 중화제독설비에 의해 처리하여 허용농도(TWA*) 이하로 대기 방출

*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ed Average)

시간가중치로서 거의 모든 노동자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의 평상 작업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농도로서 시간에 중점을 둔 유해물질의 평균농도

- 실험 장비 및 가스케비넷과 중화제독설비는 가능한 가깝게 설치
- 중화제독방법은 산화, 환원, 중화, 가수분해, 흡수, 흡착 또는 이들의 조합



Wet Scrubber



Heat-Wet Scrubber

독성가스 중화제독방식

| 구분 | GAS | SCRUBBER 종류 | | | | | | | TLV ^(*) |
|--------------------------|---|-------------|-----|-------------|------------|----------|----------|------------|--------------------|
| | | HEAT WET | WET | HEAT FILTER | ABSOR BENT | BURN WET | CATALYST | PLASMA WET | |
| 가연성 가스 | AsH ₃ | ○ | | ○ | ○ | ○ | | ○ | 0.05ppm |
| | B ₂ H ₆ | ○ | ○ | ○ | | ○ | | ○ | 0.1ppm |
| | DCS | ○ | ○ | | ○ | ○ | | ○ | N/A |
| | GeH ₄ | ○ | | ○ | | ○ | | ○ | 0.2ppm |
| | H ₂ | ○ | | ○ | | ○ | ○ | ○ | N/A |
| | PH ₃ | ○ | | ○ | ○ | ○ | | ○ | 0.3ppm |
| | SiH ₄ | ○ | | ○ | ○ | ○ | | ○ | 5ppm |
| | Si ₂ H ₆ | ○ | | ○ | ○ | ○ | | ○ | N/A |
| | B(C ₂ H ₅) ₃ | ○ | ○ | ○ | ○ | ○ | | ○ | — |
| | (C ₂ H ₅ O) ₄ Si | ○ | | ○ | ○ | ○ | | ○ | 10ppm |
| 수용성 가스 | P(OC ₂ H ₅) ₃ | ○ | ○ | ○ | ○ | ○ | | ○ | — |
| | BCl ₃ | ○ | ○ | | ○ | ○ | ○ | ○ | N/A |
| | Cl ₂ | | | | ○ | ○ | ○ | ○ | 0.5ppm |
| | F ₂ | ○ | ○ | | | ○ | ○ | ○ | 1ppm |
| | HCl | ○ | ○ | | ○ | ○ | ○ | ○ | 5ppm |
| | HF | ○ | ○ | | ○ | ○ | ○ | ○ | 3ppm |
| | NH ₃ | ○ | ○ | | ○ | ○ | ○ | ○ | 25ppm |
| PFC ^(*) 가스 | WF ₆ | ○ | ○ | | ○ | ○ | | ○ | 1mg/m ³ |
| | CF ₄ | | | | | ○ | ○ | ○ | — |
| | C ₂ F ₆ | | | | | ○ | ○ | ○ | — |
| | C ₃ F ₈ | | | | | ○ | ○ | ○ | — |
| | NF ₃ | | | | ○ | ○ | ○ | ○ | 10ppm |
| | SF ₆ | | | | ○ | ○ | ○ | ○ | 1000ppm |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 모든 독성가스 용기는 실린더 캐비닛에 보관
- 실린더 캐비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 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실린더 캐비닛은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 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되어야 함



실린더캐비닛

독성 혼합가스 독성여부 판정 방법

- 독성가스가 혼합된 가스의 독성 판정 계산식

$$\text{LC}_{50} = \frac{1}{\sum_i \frac{C_i}{\text{LC}_{50i}}}$$

여기에서,

C_i : 혼합가스에서 i번째 독성 성분의 몰분율

LC_{50i} : 부피 ppm으로 표현되는 i번째 독성 성분의 치사농도($\text{LC}_{50} < 5000\text{ppm}$)

독성가스의 분류

● 물질 자체의 독성 기준(KS B ISO 5145)

- 분류1 : 무독성($LC_{50} > 5000\text{ppm}$ (V/V)일 때)
- 분류2 : 독성($200\text{ppm} \leq LC_{50} < 5000\text{ppm}$ (V/V)일 때)
- 분류3 : 맹독성($LC_{50} < 200\text{ppm}$ (V/V)일 때)

● 인체 유해성 기준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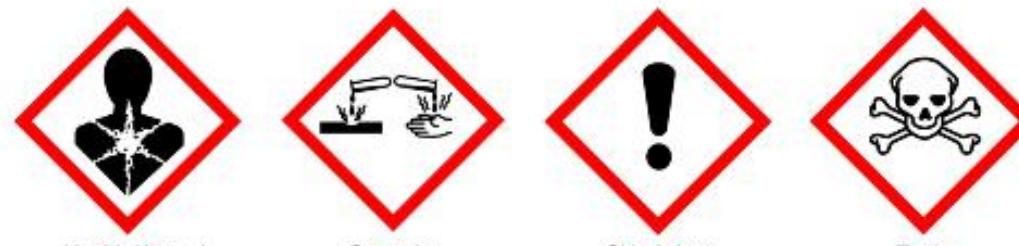
- 분류1 : 흡입 시 치명적 $0\text{ppm} < LC_{50} < 100\text{ppm}$ (V/V)일 때
- 분류2 : 흡입 시 치명적 $100\text{ppm} < LC_{50} < 500\text{ppm}$ (V/V)일 때
- 분류3 : 흡입 시 독성 $500\text{ppm} < LC_{50} < 2500\text{ppm}$ (V/V)일 때
- 분류3 : 흡입 시 해로움 $2500\text{ppm} < LC_{50} < 20000\text{ppm}$ (V/V)일 때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Physical Hazards



Health Hazards



Reference Tools

<http://www.osha.gov/dsg/hazcom/ghs.html>

Environmental Haz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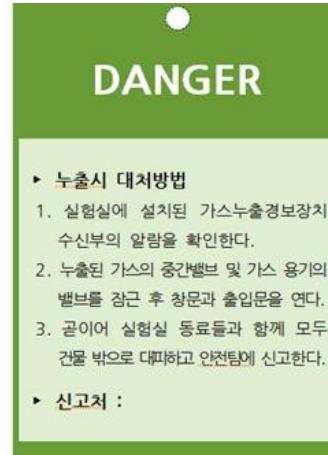
용기보관소 표지판(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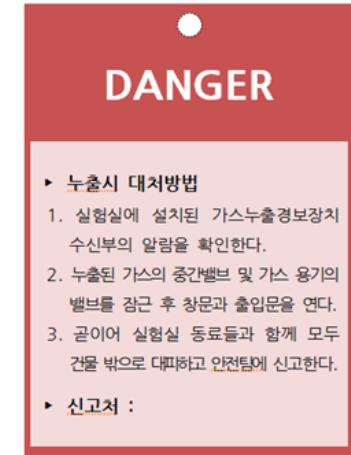
고압가스 용기 태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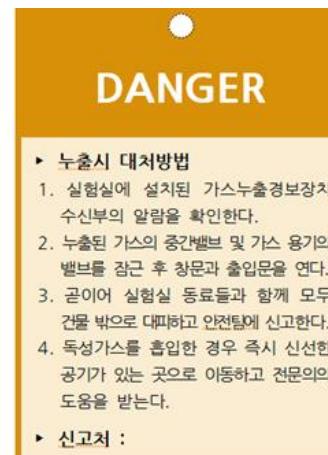
조연성 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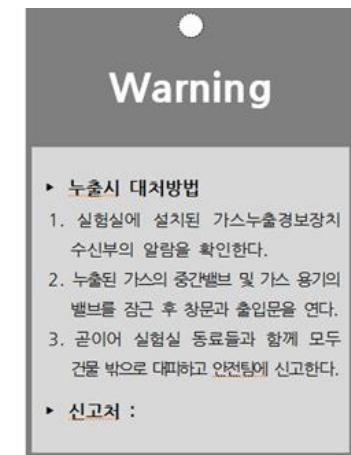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불연성 가스



3. 가스 설비 및 운영 기준



- 용기 보관실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 및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시공
- 자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보관소는 각각 구분하여 설치
- 용기 보관실은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갖추어야 함
- 통풍구는 바닥면적의 3% 이상 이어야 하며, 2방향 이상이어야 함
- 독성가스 용기보관실 내부는 음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미차압력계를 설치
 - 가스가 누출될 경우 흡입 장치와 연동하여 누출된 가스가 중화제독장치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함
- 용기 보관실에는 저장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누출경보장치를 설치
 - 가스누출경보장치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함

- 고압가스 용기보관실에 자연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강제 환기시설 설치
- 가스의 비중에 따라 용기보관실의 상, 하부에 흡입구를 갖춘 강제 환기시설 설치
- 추천되는 용기보관실의 공기순환량

| 구 분 | 불연성 | | 산화성 | | 가연성 | | 독성 | | | 맹독성 | | |
|--------------------------|--------|--------|--------|--------|--------|--------|--------|-----------|--------|--------|-----------|--------|
| 저장소 부피(m^3) | 283 미만 | 283 이상 | 283 미만 | 283 이상 | 283 미만 | 283 이상 | 113 미만 | 113 ~ 283 | 283 이상 | 113 미만 | 113 ~ 283 | 283 이상 |
| 시간당 공기순환량(m^3/hr) | 6 | 4 | 9 | 6 | 10 | 6 | 12 | 10 | 6 | 12 | 12 | 10 |

- (1) 맹독성은 허용농도 LC50 200ppm미만인 것을 의미
 (2) 시간당 공기순환량(Air Change Rate, ACH)은 용기보관실 부피만큼의 공기가 시간당 회전을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100 m^3 의 가연성 가스 저장소는 10ACH가 필요하므로 $100m^3 \times 10ACH = 1,000m^3/hr$ 의 공기가 순환하여야 한다는 것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는 그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설치
- 비상전력설비에 연동하여야 하는 설비
 - (1) 가스누출경보장치
 - (2) 실린더캐비닛
 - (3) 중화제독장치
 - (4) 배기팬
 - (5) 기타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



실린더 전용 캐비닛

구조

-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함
- 실린더캐비닛 내부의 충전용기 또는 배관에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함
- 실린더캐비닛에 사용하는 가스는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함
- 가연성가스 용기를 넣는 실린더캐비닛은 당해 실린더캐비닛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함

성능

- 배관계에 대하여 질소나 공기 등 기체로 상용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팽창과 균열이 없는 것으로 함

표시

- 실린더캐비닛의 몸통 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이 각인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되어 이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
 - 제조자의 명칭, 가스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최고 사용압력 등

중화제독장치

일반사항

- 독성가스는 중화제독설비에 의해 처리하여 허용농도(TWA) 이하로 대기 방출
-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장비 및 가스케비넷과 중화제독설비는 가능한 가깝게 설치하며 독성가스를 직접 처리
- 중화제독방법은 산화, 환원, 중화, 가수분해, 흡수, 흡착 또는 이들의 조합, 그 밖의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처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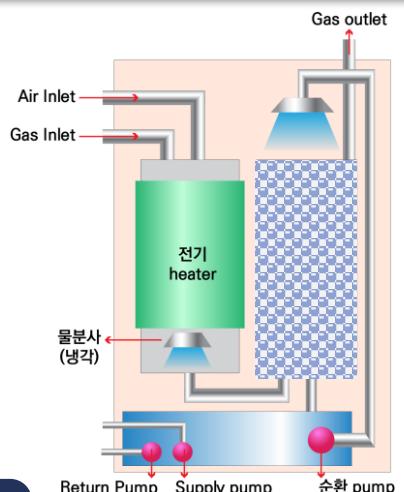
- 배관계에 물이나 흡수제로 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조치
- 연소설비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조치
- 플라즈마 또는 촉매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조치

제독제

- 독성가스 종류에 따라 적합한 흡수, 중화제 1가지 이상의 것을 보유



Heat-Wet Scrubber



가스누출 경보장치

설치장소

- 연구실 안에 설치되는 경우,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설치
- 연구실 밖에 설치되는 경우, 설비군의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설치
- 감지대상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바닥에서 30cm이내 설치
- 감지대상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에서 30cm이내 설치
-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는 피함
- 출입구 부근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피함

구조

-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함
- 가연성가스의 경우 방폭 성능이 있어야 함

기능

-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 $1/4$ 이하에서 경보를 울려야 함
-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에서 경보를 울려야 함
-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30초 이내로 함

자동차단밸브

구 조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 또는 저장소
-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 또는 저장소

성 능

- 가스용기의 메인 밸브를 잠그는 방식
- 가스의 1차 압력조정기 후단의 배관을 차단하는 방식

표 시

- 사용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 가스검지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즉시 차단하는 기능

과압안전장치

설치장소

-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농도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

구조

- 가스설비 내 고압가스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가스설비 내 고압가스에 내식성이 있어야 함

기능

- 고압가스 설비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함
- 과압안전장치를 통해 분출된 가스는 밴트라인으로 연결하여 옥외 또는 적절한 처리장치로 이송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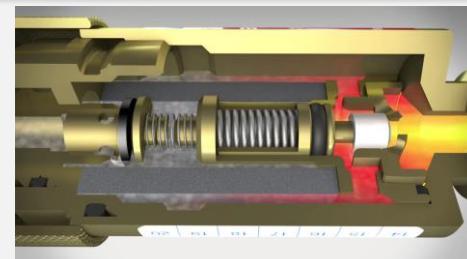


역화방지장치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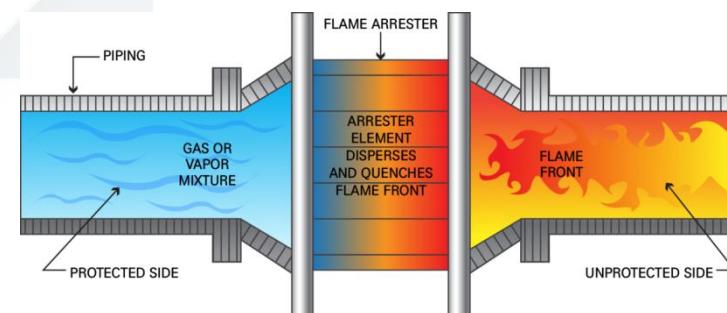
- 수소화염 또는 산소, 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설치

구조



기능

-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4. 사고 사례 및 대처 요령



가스누출 사고

사고개요

- 일 시 : 2010. 11. 15
- 장 소 : 신소재공학과
- 사고물질 : 인화아연
- 사고내용 : 개봉된 인화아연과 공기중의 수증기가 반응하여 포스핀 가스 누출

사고원인 및 피해내역

- 사고원인 : 보관방법 미흡
- 피해내역 : 포스핀 가스 누출



가스누출 사고

사고개요

- 일 시 : 2012.1.14
- 장 소 : 기계공학과
- 사고내용 : 가연성 가스인 DME 저장용기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됨



사고원인 및 피해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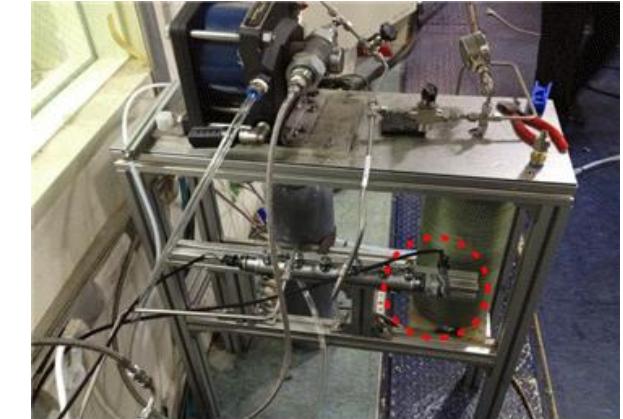
- 사고원인 : 배관 연결부를 비닐호스 사용
- 피해내역 : 없음



가스누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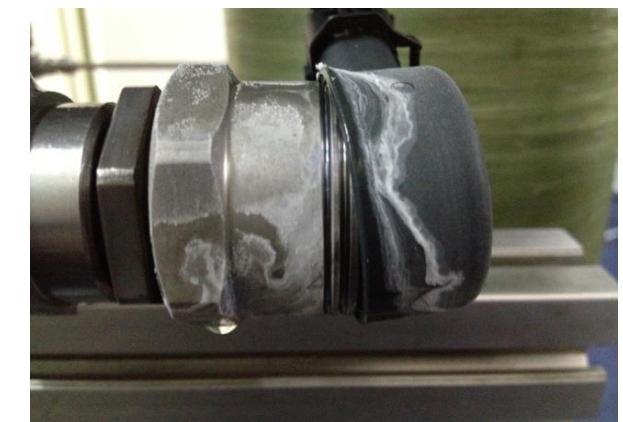
사고개요

- 일 시 : 2013.3.21
- 장 소 : 기계공학과
- 사고내용 : 실험장치 부속품이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됨



사고원인 및 피해내역

- 사고원인 : 부속품 불량
- 피해내역 : 가연성가스(DME) 누출



가스누출 사고

사고개요

- 일 시 : 2016. 9. 30
- 장 소 : 고압가스용기 옥외저장소
- 사고내용 : 압력조정기 연결부에서
독성가스(CO)가 누출됨



사고원인 및 피해내역

- 사고원인 : 압력조정기의 다이어프램 불량
- 피해내역 : 독성가스(CO) 누출



가스누출 사고

사고개요

- 일 시 : 2018. 7. 21
- 장 소 : 고압가스용기 옥외저장소
- 사고내용 : 충전기한 초과된 메탄가스용기의 안전밸브(파열판식)이 파손되면서 일시에 다량의 가스가 누출됨



사고원인 및 피해내역

- 사고원인 : 용기온도 상승 및 충전기한 초과
- 피해내역 : 가연성가스(메탄) 누출



5. 가스사고 예방 및 대책



- 모든 고압가스를 취급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튀거나 흐를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구나 고글 상시 착용, 손은 깨끗하고 건조된 단열 가죽장갑이나 초저온용 단열장갑 착용
- 슬리퍼나 앞이 트여 있는 신발을 신지 말고, 안전화 등 비침투성 신발 착화
- 항상 실험가운을 착용하여야 하며,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염가운 착용



고글



안면보호구



초저온장갑

- 연구활동종사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가스의 누출 여부를 비눗방울이나 휴대용 가스누출 경보장치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 산소를 사용하는 때에는 석유류, 유지류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 레귤레이터 등 가스설비를 깨끗이 닦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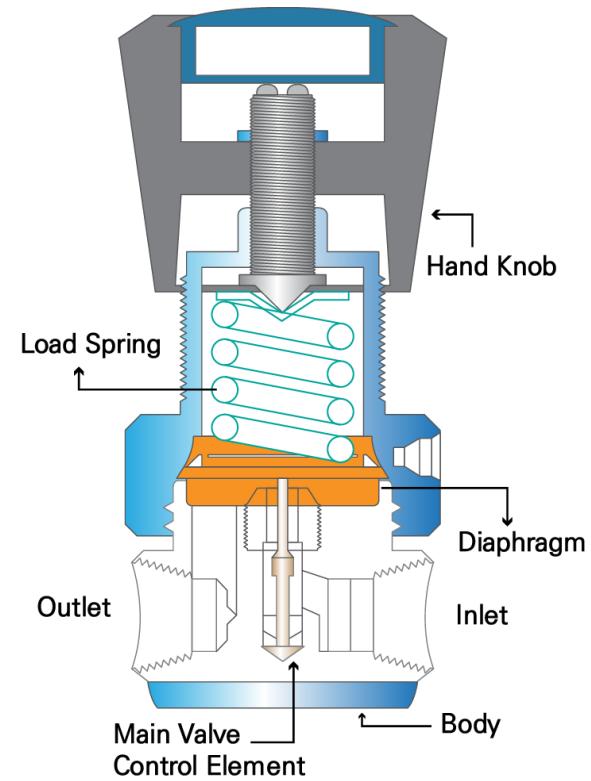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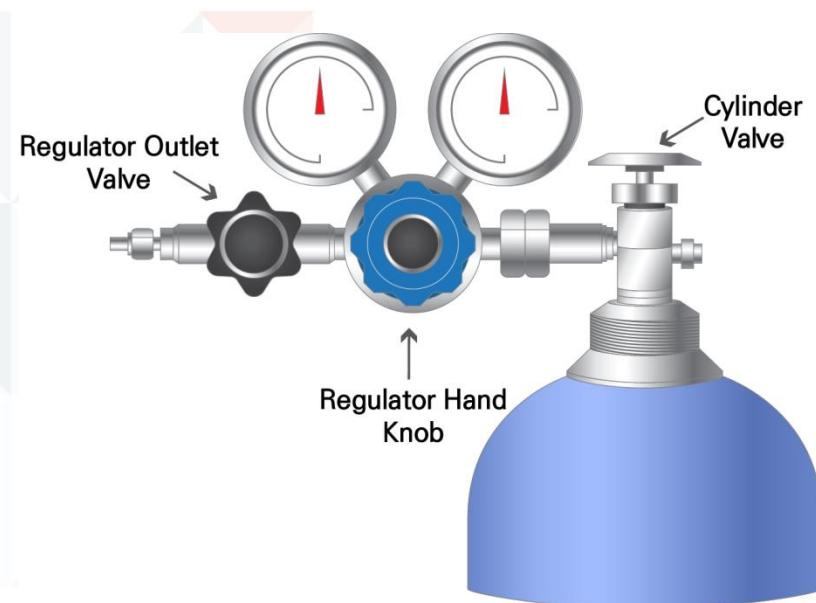
●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밸브 취급 기준

- 1) 각 밸브에는 개폐 방향을 명시
- 2) 밸브 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가스명, 흐름 방향, 사용압력 표시
- 3)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안전밸브, 자동차단밸브, 제어용 공기밸브 등)는 다음과 같은 조치 강구
 - 밸브 등에는 그 개폐 상태를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 밸브 등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의 채움, 봉인, 조작금지 표지, Lockout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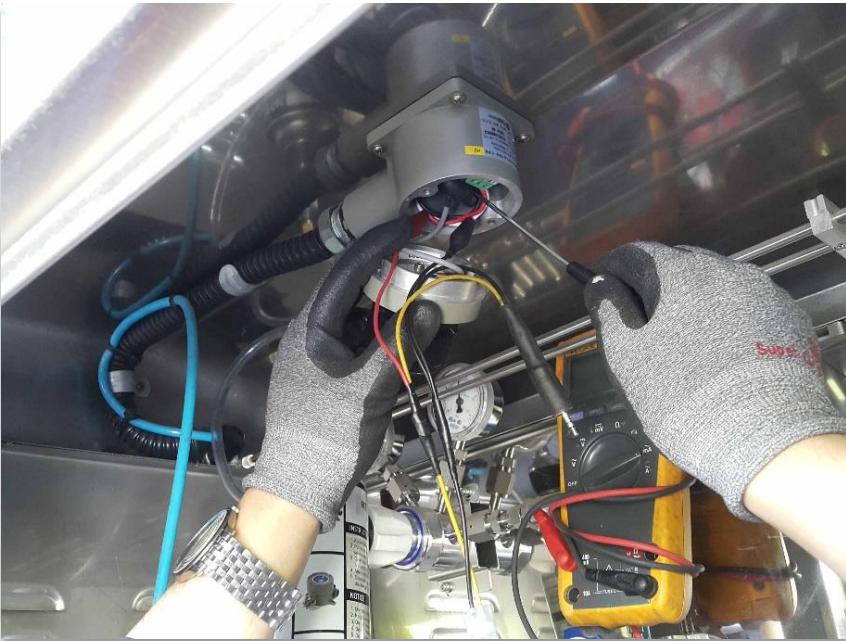
● 밸브 등의 조작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주지 시킴

- 1)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관련된 실험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의 조작은 취급 전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와 충분히 확인한 이후 조작
- 2) 밸브는 직접 손으로 조작

- 1 사용하려는 가스의 사용압력이 압력조정기의 타입과 맞는지 확인
- 2 압력조정기 설치 전에 충전구의 먼지 또는 이물질 등을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 후 체결
- 3 압력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 설치
- 4 독성가스인 경우 압력조정기의 몸체 및 다이어프램의 재질이 부식이 없는 적합한 재질인지 확인



- 가스누출경보장치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함
- 검교정 결과에 따라 센서 교체 등 즉시 필요한 후속조치 실시



Sensor 정격전압 측정 및 교정



Span Gas 주입 – 응답시간 측정

가연성가스 누출 시 조치요령

- ① 연구실 설치된 가스누출경보장치 수신부의 알람 확인
- ② 누출된 가스의 종류와 가스농도를 확인
- ③ 누출된 가스의 중간밸브 및 가스 용기의 메인밸브 잠금
- ④ 수신부의 알람이 1차 알람인 경우, 창문과 출입문 열고 환기
- ⑤ 수신부의 알람이 2차 알람인 경우, 즉시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모두 건물 밖 집결지로 대피
- ⑥ 119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로 신고, 이 때 누출된 장소 및 가스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전달
※ 필요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움 요청

독성가스 누출 시 조치요령

- ① 연구실 설치된 가스누출경보장치 수신부 알람 확인
- ② 누출된 가스의 종류와 가스농도 확인
- ③ 즉시,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모든 건물 밖 집결지로 대피
- ④ 119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로 신고, 이때 누출된 장소 및 가스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전달
※ 필요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움 요청
- ⑤ 독성가스를 흡입한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전문의의 도움 받음

국내용기 구입

-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구입
- 고압가스 구입 시 공급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연구실 비치
- 연구활동종사자는 용기의 충전기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
- 독성가스 구입 시 공급계약서, 가스성적서 등 가스 공급 관련 문서 남김
- 가스용기 폐기는 구입한 업체로 반납 및 폐기 처리
-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과 수량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신고

액체질소, 산소, 알곤 등 초저온용기 안전관리

- 액체질소, 액체알곤 등 불활성의 초저온가스의 용기는 지하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관 및 사용 금지
- 초저온가스를 보관 및 사용하는 장소에는 연구실 내부에 산소농도측정기 설치
- 초저온가스를 보관 및 사용하는 장소는 충분한 환기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초저온가스 용기는 항상 수직상태로 세워져 있어야 함
- 용기를 이동할 경우 굴리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용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



THANK YOU